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by Police

정 병 곤
남부대학교

Jeong byeong-gon
Nambu Univ.

요약

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강력사건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자와 동행하도록 하는 등 현재보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더 확충되어야 하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전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중심으로 수사하여야 국민의 신뢰도 얻고 실제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I. 서론

범죄피해자 보호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다. 경찰의 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사건의 실제 진실을 밝혀 범인을 잡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보호는 중요하지만 아직도 범죄피해자보호가 미흡한게 사실이다. 조두순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수차례 조사받게 하는 등 추가 피해를 입혔다"며 원고일부승소로 판시하였다.[1]

II.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1. 강력범죄피해자 보호

강력범죄는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을 말한다. 강력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나 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의 반복조사가 가해자와 마주칠 두려움의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 직후에 두려움이나 공포에 압도되어 범죄피해자는 외부 활동을 꺼리거나 아예 침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정서적 안정과 함께 정보 제공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시 동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자와 동행하도록 하여 강력범죄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2]

2.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

성폭력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두려움이나 불안, 우울 등을 갖거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되풀이되는 악몽 등 외상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에게 상해흔적이 없거나 가해자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주장을 의심해 본다면 또다시 정신적 피해를 입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성폭력범죄 특성상 수사절차에서 가해자와의 대면이나 대질신문을 방지하고, 피해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편안히 조사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관은 범죄피해자에게 범죄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인격권 침해 질문이나, 가해자와의 합의나 고소취하를 유도해서는 않된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성폭력범죄의 전담수사관 및 전문가 참여제도의 운영이 요구된다.

3. 가정폭력범죄피해자 보호

가정폭력범죄는 넓게 정의하면 가족,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행이나 정신적 학대, 괴롭힘 등을 포함한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사건 1만건에 구속지는 단 1건으로 가해자 대부분이 불구속처리 되고 있다.[3] 가정폭력범죄에서 경찰 초기대응은 무엇보다도 중요해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 경찰관은 피해자가 대부분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신경써야한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친절한 자세로 신속·정확하게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 경찰이 빨리 도착할 것이라고 안심시키면서 피해사실, 응급차나 다른 조력이 필요한지, 가해자가 현장에 함께 있는지, 곧바로 폭력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등 피해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등 강력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가정폭력범죄피해자 신변보호의 취약성 때문이다.[4]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퇴거, 격리, 접근금지 할 수 있게 임시조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함으로써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5]

4. 재산범죄피해자 보호

재산범죄는 절도, 사기 등 범죄로, 재산범죄피해자는 피해품인 재산을 찾아주는 것을 가장 원할 것이다. 재산범죄 중 절도의 경우 미신고 주요 원인으로 경찰의 범인 검거와 재산회복을 믿지 못하는 수사신뢰에 대한 불신이 있다. 경찰의 검거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피해자의 신고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재산범죄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범인 검거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관은 수사과정을 포함한 범집행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물품에 대해서는 취득과정에 대해 신속히 알려주고 이를 환부해 주어야 한다.

Ⅲ. 결론

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해 신변경호 및 안전숙소의 제공 등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는 강력범죄피해자 등에 한정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있다면 해당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신변보호를 하는 방향으로 신변보호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방향은 범죄피해자에게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형태이다. 그렇지만 경찰은 무엇보다도 범죄의 가해자들을 수사하여 모두 처벌받게 하는 것도 범죄피해자 보호의 방법이 될 것이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의 전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중심으로 수사하여야 국민의 신뢰도 얻고 실제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머니투데이 2011.02.10.
<http://news.mt.co.kr/mtview.no=2011021014344719870&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 [2] 김태경/윤경희, “강력범죄피해자의 수사절차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3호, p.36, 2016.
- [3] 오마이뉴스 2017.05.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6197
- [4] 김재민,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확보 과정에서의 수사경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p.329, 2006.
- [5] 오세연/박원배,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치 사례 분석 및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3권 제2호, p.121, 2011.